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0. 3.
제출자 : 이천시장

□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며,
-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 범위를 공동주택의 경우 5세대에서 2세대로 개정되었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업은 수의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여 감면 대상에서 과세로 전환하고,
-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등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감면대상을 종전의 규정은 물론 앞으로는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들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조).
- 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본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상의 같은 세대인 직계존비속에서 앞으로는 종전의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까지 포함하여 확대함(안 제4조).
- 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종전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전액을 감면함(안 제10조).
- 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조정함(안 제12조).
- 마. 감면대상인 주차장업은 공공성이 미약하여 5년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함(안 제15조, 제16조).
- 바.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2조의2).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취득한”을 “감면 신청하는”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의 제목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취득한”을 “감면 신청하는”으로 하고, 동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5세대이상”을 “2세대이상”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8회 - 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13조제1항 본문중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을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22조의2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제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으로,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으로, 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으로, 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아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u>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u></p> <p><u><단서신설></u></p> <p>1.~4. (생략) ③(생략)</p>	<p><u>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아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아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u></p> <p>②----- ----- ----- ----- ----- <u>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u> ----- <u>감면 신청하는-----</u> ----- <u>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 일부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u></p> <p>1.~4.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장애인소유 <u>승용자동차</u>에 대한 감면)</p> <p>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4. (생략) ②(생략)</p> <p>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4조 (장애인소유 <u>자동차</u>에 대한 감면)</p> <p>①----- ----- ----- -----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인·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 -----감면 신청하는----- -----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 관</u></p> <p><u>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u></p> <p><u>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u></p> <p><u>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u></p> <p><u>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u></p> <p><u>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u></p> <p><u>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u></p> <p><u>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u></p> <p><u>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u></p> <p><u>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u></p> <p><u>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u></p> <p><u>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u></p> <p><u>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u></p> <p><u>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u></p> <p><u>사업소세(재산합)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u></p> <p><u>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u></p> <p><u>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u></p> <p><u>(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u></p> <p><u>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u></p> <p><u>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u></p> <p><u>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u></p> <p><u>(재산합)를 추징한다.</u></p>	<p><u><삭제></u></p>
<p><u>제16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u></p> <p><u>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u></p> <p><u>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u></p> <p><u>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u></p>	<p><u><삭제></u></p>

(제38회 - 1차 자치행정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p>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적절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이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함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함. $\text{연간수입금액} = \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frac{365}{\text{영업기간(일수)}}$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 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함 	
<p>제1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의하여 사업면허를</p>	<p>제1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p>

현 행	개 정 안
<p>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 ----- -----</p>
<p>제22조의2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이천시 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제3호</u>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u>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u>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p>제22조의2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 -----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u> ----- ----- ----- ----- ----- ----- ----- ----- -----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u> ----- ----- ----- ----- ----- 1.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u> ----- ----- 2.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u> ----- -----</p>